

수도계량기 직권폐전 공시송달 공고

「진도군 수도급수조례」 제22조제3항 근거, 진도군 지역 내 장기간 관리부재, 수도요금 미납에 따라, 미사용 상수도급수전(수도계량기)을 직권폐전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1. 공고명(처분제목): 「수도계량기 직권폐전」 공시송달 공고
2. 공고기간(이의신청기간): 2024. 6. 21. ~ 2024. 7. 8. (15일간)
3. 관련근거: 「진도군 수도급수 조례」 제22조제3항 및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
4. 공고원인: 장기간 수도급수전(수도계량기) 미사용 및 수도요금 미납
5. 공고대상자 내역

성명	계량기 주소	제작번호	비고
김O영	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원포길 150-11	20-051032	

6. 공고방법: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
7. 공고내용(처분내용)
 - 공고기간이 경과되면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내용은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.
 - 공고기간 이내에 직권폐전에 대한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「진도군 수도급수 조례」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권폐전됨을 알려드립니다.
8. 문의전화: 진도군 환경수질과(상수도팀 ☎061-540-6208)

2024. 6. 21.

진도군수

의견제출서				
1. 처분내용		장기 미사용 급수설비 직권폐전		
2. 의견 제출자	수용가명		전화번호	
	주소			
3. 의견		<p>※ 상수도 폐전이 불가능한 사유에 대해 적어주시기 바라며 3개월 이내 건물재건축 계획 등이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</p> <p>※ 적으시려는 내용을 본 서식에 모두 담을 수 없는 경우 다른 종이에 이어 적으실 수 있습니다.</p>		
4. 기타				
<p>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(제31조 제3항)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24년 월 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출자 : (서명 또는 인)</p> <p>진도군수 귀하</p>				